

행정처분기준(제6조의3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령	처분기준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	취소
나.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·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) 지정제품의 품질·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) 1)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	취소 경고
다.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	법 제16조의5제1항제3호	취소